

제 290 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5.12.9.)

조례 · 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목 차

1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8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2025. 11. 24.
- 나. 발의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
정함과 동시에 거창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포상대상,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를 정함(안 제2조~제4조)
- 다.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에 대해 정함(안 제5조~제7조)
- 라. 포상방법, 포상 추천 등에 대해 정함(안 제8조~제11조)
- 마. 공적심사위원회 등에 대해 정함(안 제12조~18조)
- 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취소 등에 대해 정함(안 제19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상훈법」 제8조, 「상훈법 시행령」 제2조
- 「정부표창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2025.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참고: 해당없음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필요

-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후원명칭 사용 근거 마련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28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상훈법」 제8조, 「상훈법 시행령」 제2조
- 「정부표창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안 제8조에 따라 비용 발생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내 용 요 약
제1조(목적)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제2조(포상 대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 등
제3조(포상권자)	의장이 포상 권한을 가짐
제4조(포상 종류)	표창장, 감사장, 상장
제5조(표창장)	수여기준: 공적이 뚜렷한 경우 등
제6조(감사장)	수여기준: 대회 입상, 성적 우수 등
제7조(상장)	수여기준: 대회 입상, 성적 우수 등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서식에 따르고 부상 수여 가능
제9조(포상추천)	의원·기관·단체장이 추천 가능
제10조(포상제외대상)	수공기간, 징계, 부도덕 행위 등
제11조(포상시기)	수시 시행 가능
제12조(공적심사)	위원회 의결 필요 (감사장·상장은 생략 가능)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5명
제1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이해관계자 배제
제1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공적의 타당성, 영향력 등
제16조(이중포상 금지)	이중포상 금지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대장 등재
제18조(포상취소)	허위·부정 등
제19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공익성 있는 행사 대상
제20조(사용승인 취소 등)	부정행위, 사회적 물의 등
제21조(후원명칭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즉시 중단 요구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지방자치법」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창군의회의장이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포상 대상을 외국인 및 다른 지역 거주자도 포함 가능해 포용적이라 할 수 있음.
-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는 포상의 종류별로 목적별 수여가 가능하도록 분명히 구분하였으며, 기준 또한 구체적이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에서는 부적격자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 대상과 엄격히 구분하였음.
- 안 제11조에서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했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안 제12조에서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간소화한 장점이 있으나, 그에 따른 공정성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사항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5조 역시 대상자 선발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심사의 적정성을 확보함.
-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이중포상 금지, 포상대장 등재,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
-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써 승인 요건이 구체적이며 공익성이 강조되어 있고, 승인 취소 시에는 해명 기회 부여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 전반적으로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적심사위원회 및 제척·기피 조항으로 이해충돌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포상 시기 및 감사장·상장 심사 생략 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포상 취소 및 환수 절차에 대한 통지 방식, 이의제기 절차 등 구체적 이행 방법도 추가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개정 2019. 12. 10.>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상훈법 시행령」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 12. 3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

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전문개정 2013. 1. 16.]

[제목개정 2015. 12. 31.]

□ 「정부 표창 규정」

-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 상장, 수장 · 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 · 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2025. 11. 24.
- 나. 발의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의: 해당없음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2025.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참고: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필요
 - 규칙의 실효성 상실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해당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규칙 폐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